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71
----------	-----------

제출연월일	2006. 12. 7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신규 업무 발생 등 효율적인 사무 분장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과의 신설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나. 신설 실과의 사무분장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서비스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복지관 담당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

- 업무명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이관 : 교육문화센터 ⇒ 주민생활지원과

라.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 조정

- 인구정책 업무 전반 : 기획감사실 ⇒ 전략사업추진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한 조직관리 지침 **【도 행정과-11382(2006. 9.19)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입법예고 결과 : 생략(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2단계 추진 지침에 의한 개편)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6. 주민생활지원과장

-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서비스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과장

- 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나.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 다.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실·과의 설치)</p> <p>①----- <u>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u>----- -----</p> <p>②(생략) 1.~5.(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6.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다. 관광홍보·축제 및 관광행사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진흥 및 여가문화에 관한 사항</p> <p>7. 사회복지과장 가. 군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체계 및 지역사회복지의 기획·개발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라.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p>	<p>제3조(실·과의 설치)</p> <p>①----- <u>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u>----- -----</p> <p>②(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주민생활지원과장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정에 관한 사항 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p>7. 사회복지과장 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p> <p>8. 문화관광과장(현행 제6호와 같음)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다. 관광홍보·축제 및 관광행사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진흥 및 여가문화에 관한 사항</p>

<p>8. ~ 11. (생략)</p> <p>제4조(여유기구) <u>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u></p> <p>1. <u>군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처리 및 군 전략에 관한 사항</u></p> <p>2. <u>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 <u><신 설></u></p> <p>3. <u>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u></p> <p>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1. <u>각종 교육·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p> <p>2. <u>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3. <u>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9. ~ 12. (현행 제8호 내지 제11호와 같음)</p> <p>제4조(여유기구) <u>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u></p> <p><u><삭 제></u></p> <p>1. <u>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u></p> <p>2. <u>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u></p> <p>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1. <u>각종 교육·문화예술행사의 기획·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p> <p><u><삭 제></u></p> <p>2. <u>군립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	---